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5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영환·진성준·오기형

모경종・김남근・조인철

오세희 • 복기왕 • 채현일

박지혜 · 정일영 · 안도걸

이수진 · 김성회 · 김 윤

조정식 · 강선우 · 김남희

정성호 · 정태호 · 최기상

민형배 · 황명선 · 전현희

박범계 · 김성환 · 허 영

이기헌 · 김기표 · 박희승

김영진 • 황정아 • 추미애

이재명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별세법의 조세특례항목 일부는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 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및 제14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1항 중 "조세감면"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 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 성) ① ------「국 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 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 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감면----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 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 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세법의 조세지출 항 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다.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 <신 설> 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 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능 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 (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세법의 조세지출 항목 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